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주택가격제도 시행과 재난방재조직·혁신분권·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512명 \Rightarrow 2,538명 (증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10명 \Rightarrow 1,436명 (증2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원내역 : 일반직 26명(4급1, 5급7, 6급8, 7급10)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참고자료 :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중 “2,512명”을 “2,53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10명”을 “1,436명”으로 한다.

제3조중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를 “직급별 정원은 별지와 같이”로 한다

부칙(조례 제2842호, 2005. 1. 1) 제2조중 “정원중 3명”을 “정원중 별표의 본청정원 3명(7급1, 8급1, 기능10급1)”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급정원) 별표의 본청정원중 3명(4급1, 5급2)의 정원은 2005년 12월 31까지로 하고, 4명(4급1, 5급3)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사업소의 정원중 5명(3급1, 4급1, 5급3)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별표의 본청정원 5명(5급1, 6급2, 7급2)의 정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5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u>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u>
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512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10명</u> 2.~4. (생략)	제2조 (정원의 총수) <u>2,538명</u> 1. : <u>1,436명</u> 2.~4. (현행과 같음)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u>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u> 정한다.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u>직급별 정원은 별지와 같이</u>
부칙(조례 제284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u>정원중 3명</u> 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조례 제2842호)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정원) <u>정원중 별표의 본청 정원 3명(7급1, 8급1, 기능10급1)</u>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